

	<b>원격수업에 관한 운영 규정</b>	규정 번호	2-4-27
		제정 일자	2021. 10. 1.
		개정 일자	2024.3.20.
		책임부서/팀·계	교무처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원격수업을 운영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원격수업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간,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상호작용적인 원격통신을 활용하여 교수자의 강의와 피드백, 행정적인 지원과 확인 등을 제공되는 교육을 말한다.

## 제 2 장 조 칙

**제3조(구성)** 원격수업은 교학처에서 담당하며, 원격수업 관리위원회를 둔다.<개정 2023.3.30., 2023.7.6., 2023.12.7., 2024.3.20.>

**제4조(업무)** 원격수업 지원 업무는 교학처에서 담당하며,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23.3.30., 2023.7.6., 2023.12.7., 2024.3.20.>

1. 원격수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원격수업 관련 대외협력 및 홍보활동 지원
3. 원격수업 수행 모델 설정
4. 원격수업 관리시스템 운영
5. 원격수업 만족도 조사, 결과평가 및 개선사항 도출
6.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**제5조(위원회)** ① 원격수업의 콘텐츠 질 관리와 원활한 수업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격수업 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
1. 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내로 총장이 위촉하되, 교학처장, 기획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
<개정 2023.3.30., 2023.7.6., 2023.12.7., 2024.03.20.>

2. 교학처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23. 3. 30., 2024.03.20.>
3.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보직 기간으로 하고, 기타 위원의 경우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제반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
2.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
3. 원격수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4. 기타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

③ 위원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2.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6조(회의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,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.

- ③ 위원은 과반수 이상 위원의 동의를 얻어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,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 제 3 장 원격수업 운영

**제7조(교육과정)** 원격수업의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정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**제8조(개설)** 원격수업 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

1. 원격수업은 매년 초 학과신청과 개설이 필요한 교과목을 교육과정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.<2023. 7. 6. 개정>
2. 원격수업은 본 대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과목 중에서 개설한다.
3. 원격수업은 이론 수업에 대하여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.  
단, 추가로 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 개설할 수 있다.<2023.12.7.개정>
4. 원격수업은 정규 학기에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계절 학기에도 개설할 수 있다.
5. 원격수업은 졸업학점의 최대 50%까지 개설할 수 있으며, 필요에 따라 허가원을 제출하여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. <2023.12.7., 2024.2.22. 개정>

**제9조(강좌운영)**

1. 원격수업은 본 대학 원격 학습관리시스템(Learning Management System)을 통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
2. 원격수업의 강좌운영은 오프라인(offline) 수업도 병행할 수 있다.<2023.7.6., 2023.12.7., 2024.2.22. 개정>
3. 원격수업 담당교수의 인정 수업일수는 1일이며, 개설된 시수 모두 인정한다. <2023.7.6. 개정>
4. 원격수업의 교양 교과목 강좌 당 학생 수는 60명 이상 80명 이하로 하며, 필요시 총장의 허가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. <2023.7.6., 2024.2.22. 개정>
5. <2021. 12. 23. 신설> <2022. 9. 19. 개정> <2023. 2. 23. 삭제>
6. 원격수업 담당 교수는 원활한 강좌 운영을 위하여 월 1회 이상 수강 학생들에게 강좌 운영에 대해 피드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<2023. 7. 6. 신설>
7. 수업 콘텐츠는 담당 교수가 원격 학습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며, 필요시 담당직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. <2023. 7. 6. 신설>

**제10조(수강신청)** 본 대학교 수강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.<2023.12.7. 개정>

**제11조(학점당 이수시간)** 원격수업의 학점 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.

**제12조(수업시간)** ① 차시 당 수업 콘텐츠 진행시간은 25분(1학점 기준)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. 단, 콘텐츠의 특성에 따라 토론수업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25분미만으로 제작 할 수 있다.

② <2024.2.22. 삭제>

**제13조(출석)** ① 출석 점수 산정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. <2023.12.7., 2024.2.22. 개정>

② 각 주차의 강좌를 차시 당 70%이상 수강해야 출석으로 인정한다.<2023.12.7., 2024.2.22. 개정>

③ 담당교수는 출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, 출석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.<2023.12.7. 개정>

**제14조(시험)** 시험은 중간고사, 기말고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필요시 과제물로 대체할 수 있다.<2023.12.7. 개정>

**제15조(성적평가)** ① 성적평가는 본 대학의 학칙 및 학업성적처리 규정에 따른다. <2024.2.22. 개정>  
② 성적평가 기간 및 성적전표 제출은 일반과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.

**제16조(강의평가)** 강의평가는 매 학기 일반과정의 강의평가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.

**제17조(콘텐츠개발)** ① 콘텐츠 개발은 담당 교수 또는 외주 용역에 의해 개발할 수 있다.  
② 원격수업은 멀티미디어 콘텐츠(음성, 동영상, 애니메이션, 시뮬레이션 등)를 활용하여 개발한다.  
③ 개발이 완료된 교과목의 저작권은 본 대학으로 귀속한다.

**제18조(영상운영기간)** 원격교육 콘텐츠 운영은 제작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운영기간 경과 콘텐츠는 재제작하여야 한다. <2021. 12. 23. 개정>

**제19조(시설 및 설비)** 원격수업을 활용하는 경우 양질의 원격교육 콘텐츠를 안정적인 환경에서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 수준의 서버·소프트웨어·네트워크·정보보호시스템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.

#### 제 4 장 재정운영 및 기타

**제20조(재정)** 재정은 신안산대학교 교비회계, 산학협력단회계, 정부 및 기관단체 지원금,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.

**제21조(기타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 학칙 및 규정을 준용한다.

##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##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2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규정 시행 전인 2022학년도 2학기 수강생부터 적용한다.

##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##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##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3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##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의 제3조(구성), 제4조(업무), 제5조(위원회), 제8조(개설), 제9조(강좌운영), 제10조(수강신청), 제13조(출석), 제14조(시험)은 2023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의 제8조(개설), 제9조(강좌운영), 제12조(수업시간), 제13조(출석), 제15조(성적평가)는 2024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